

제54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10월 22일 상오 10시 45분

2. 폐 회 : 단기 4289년 10월 22일 하오 3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경인 부의장 정응표

5. 출석의원

재적의원 16명 전원

결석의원 없음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각 과장

교육청 서무과장 김용준

7. 의사일정

◆보고사항

1. 제53회 제6차 회의록 통과
2. 참전전우회 목포시지부로부터 제출된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3. 남교동 문병선외 17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접수상황보고
4. 남교동 화재지구 구호대책 진정단 상광(上光)결과 보고
5. 가압양수장 부지매수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보고

◆부의안건

1. 단기4288년도 목포시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5회)

2. 제2 삼학도(용당도선)매각처분의 건
3. 가압양수장 부지 매수 가격사정의 건
4. 동장선거 규칙제정건의의 건
5. 목포시교육위원회위원 보선의 건
6. 목포시의회의장 김경인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 심의의 건

◆토의사항

- 제53회 제6차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참전전우회 목포시지부로부터의 청원서 및 남교동 문병선 외 17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접수상황보고

서기 박찬대 낭독

◇정응표의원

- 소개의원으로서 발언하겠으나 먼저 참전전우회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에 대하여 종래 제대장병보도회(除隊將兵輔導會)에서는 현 도서관건물 일부를, 참전전우회에서는 현 국민회 2층을 사용하든 바, 금반 양기관이 합병하게 된 것입니다. 현 도서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제대장병보도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기능을 완전발휘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명도할 것을 종용한 바도 있었으나 국가안위를 쟁전에 걸머지고 헌신적 노력을 하다가 제대한 그들에 대하여 사무소 1동이 없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둘째로 남교동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에 대하여도 위생상건지로 보아 절대불가피한 것이니 여러 의원들께서는 서상 2건 전정의 내용을 심심음미 하시고 적극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망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두 건 공히 현금이 필요한 것이니 신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을 전제로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동의하다.

- 3청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전원가결

· 남교동화재지구 구호대책진정단 상광결과 보고

◇정 응 표 의원

- 본 건에 대하여 김삼성 의원과 상도 절충하였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 먼저 사세청을 방문하였든 바 마침 청장이 출장 중으로 총무과장을 만나 시장지구 이재민에 대한 감세문제 및 국세배시액 감면문제에 대하여 절충하였든 결과 법의 규정한 한도에서 감액하여 줄 것을 확약 받았으며 유감된 일이나 간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분은 상당한 난색이 엿보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고려하겠다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후 도청에 들러 문사국장을 심방 계속 구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도의회회장 광주시장 등을 방문하여 저반 베붙어준 후의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귀함하였습니다.

· 가압양수장 부지매수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보고

◇김 남 진 의원

-현지를 실지 답사하고 당사자인 지주 및 인근 주민에게도 문의하여 보았으나 본 건 가압양수장을 부설한 뒤부터는 1년 유여에 걸쳐 지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부설면적 불과 4,50평에 총면적이 482평에 달하나 88년도 예산에 50만환이 계상되어 있으니 평당 900환 정도로 하여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단기 4288년 목포시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제5회)심의의 건

◇간사 방 재 수

- 제안 이유 설명이 있었음.

◇강 영 락 의원

- 본 건 원칙적으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케 한 이후 본회의에 상정토록하는 것이 지당하나 경이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정 응 표 의원

- 원안 무수정 통과하는대로 찬성한다 동의집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나 경이한 안건이니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하여 위법을 결의하는 것 같은 감이 있다. 그러나 엄연히 경이안건 저리조례가 있으므로 원칙이란 문구를 삭제하여주기 바란다.

- 동의집 동의수락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9표 가결

· 제2 삼학호 매각처분의 건

◇건설과장 이 춘 흠

- 제안 이유 설명

◇정 응 표 의원

- 제2 삼학호를 구입한지가 만2년이 경과하였다. 지출책임자인 총무과장의 부임일자는 88년 10월이나 건설과장은 86년이라면 외 그 당시는 목살하였고 적합지않은 배를 구입하였는가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건설과장 이 춘 흠

- 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물색한 것이기 때문이고 구입당초는 객선으로 일부 개조하려고 하였기 까닭이었습니다.

◇정 응 표 의원

- 트집을 잡으려면 부지기수이나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번복않을 것을 전제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4청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전원가결

· 가압양수장 부지매수 가격 사정의 건

◇김 창 희 의원

- 본 건에 대하여는 4, 50평의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400여평의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당시 재정상 형평으로 보아 허용키 곤란한 문제이오니 해(該) 토지를 구입 후 잔여평수는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4청이 있었음.

◇김 남 진 의원

- 참고로 말하나 부지설치 당시 동력을 끄려드렸기 때문에 수개 처에 전주가 십자형으로 서있기 때문에 농지로서는 절대 부적당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도하여보았자 극히 저렴한 가격에 불과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방 재 수

- 현금실정으로 보아 가압양수장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잔여평의 매도조건 책임이라 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동의집 조건부 삭제수락 표결결과 재석16명중 전원 가결

· 동장선거 규칙제정 건의 건

◇강 영 락 의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제 146조에 의하면 동장은 동주민이 직접선거토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8개월이 경과하였고 지방선거 실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우금(于今) 그 결실을 보지못한 채 있으며 현금(現今) 당 시의 실정으로 보아도 5개 동장의 궐원이 있어 동정이 침체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적으로 보아 도규칙제정이 필요한 것이니 당 시의 회의 결의로서 동규칙의 조속제정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3청이 있었음.

◇김 상 대 의원

- 이 문제는 당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니만큼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제정을 기다리고 현금 궤원된 동에 있어 수석서기가 동장서리를 집무하고 있으니 우선 시장의 직권으로 동장임명을 1일 속히 하도록 할 것을 개의...재청

◇김 성 균 의원

- 본 의원이 탐지한 바 동 규칙을 도내무국에서 초안 중에 있다하니 불원장에 제정될 것으로 믿는 바이니 김상대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는 바이다.

- 개의 표결결과 재석 16명중 가 9표 가결

◇김 남 진 의원 긴급동의

- 현하 당 시 통신시설의 마비상태로 말미암아 공중전화 설치를 절실히 요청된다. 시내변두리 동사무소를 위시하여 중앙동사무소 요소에 공중전화를 시설토록 당 시의회에서 교섭위원 2인을 선정 요로에 교섭토록 할 것을 동의한다. 위원은 의장이 지명할 것

- 재청..5청이 있었음. 표결결과 전원 가결

◇의장 김 경 인

교섭위원으로는 김남진, 김창희 양 의원을 지명

◇김 성 균 의원

- 오전 회의를 휴회할 것을 동의

- 전원 가결

◇의장 김 경 인

- 오전회의는 휴회하고 하오 2시부터 속개할 것을 선언

※ 사회 교체

◇부의장 정 응 표

- 속개 선언. (하오 2시 정각)

- 목포시교육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강 영 락 의원

- 입후보자에 대한 거주지한계를 명백한 이후 투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김 상 태 의원

- 현 교육위원 유정두씨의 입장을 보드라도 현재실지거주는 측후동인데 산정동에서 선출된 것이다. 그리하오니 유위원의 기류부를 열람하고 그 기류가 측후동이라면 전례에 의하여 시내일원을 망라하여 선출토록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강영락 의원 찬성발언이 있었음.

◇서무과장 김 용 준

- 법령에 선거구별로 선출토록 명시된 것이니 유정두씨 문제를 위요(圍繞)라고 전례를 좇는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박 두 순 의원

- 법별 해석이 구구한 것이니 당 시의회의 결의로 시내일원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
- 재청--4청이 있었음.

◇김 남 진 의원

-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즉시 투표할 것을 개의...재청...3청
- 개의 투표결과 재석 16명 중 9표 가결

◇부의장 정 응 표

- 감표위원으로 김상태 이정권 의원을 지명
- 교육위원 투표 개표상황

성명	강대홍	개표상황	1차	5표	2차	5표	3차	5표
	장봉환			4표		8표		11표 (당선)
	김종식					2표		.
	기 권			7표		1표		.

◇부의장 정 응 표

- 최고득점자 장봉환씨 당선을 선언
- 목포시의회의장 김경인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 심의의 건

◇김 상 대 의원

- 향그럽지 못한 일에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제2대 시의회의 초 회의에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고 정부의장선출을 하였는데 개표결과 동점일 경우 연장자로 할 것인가, 추첨으로 할 것인가의 결의조차 없이 추첨으로 시행하여 본 의원이 세간에 자그만치 오해를 산 것을 기억한다.

이하 생략

(별지 결의안과 동일한 요지임)

◇강 영 락 의원

- 의회발족이래 불과 2개월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김상대 의원의 발언에 추첨문제를 드나 자치법 해설책자에 국회법에 준하라는 명문이 있는 것으로 절대위법성을 띄운 것은 아닐 것이다.

- 둘째 회의개최 중에 분과위원회를 소집 진행하였다하나, 회의장은 각분과위원장과 사전 타합으로 필한 후 한 것이며 개회는 분과위원회의 폐의후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셋째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항을 준용하나 의장이 법령에 위배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정당한 이유없이 라는 조문해설은 장기결석을 하거나 회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국회조사단이 내목할 것을 알고 의장이 사무(私務)로 여행을 하였다 하나, 그 전차회의에서 의장이 사전양해를 구하고 부의장과 각분과위원장을 영접책임자로 결의한 바 잇는데 이를 직무태만이 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정기회의인 12월을 목척에 두고 입법정신을 몰각하여 불명예스러운 결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키 곤란한 일이니 정식으로 해 건의안을 철회할 것을 개의

- 재청...4청이 있었음.

◇김 성 균 의원

- 소집시간은 10시에 하여놓고 개최선언을 아니하며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위법이다.

수백 이재민은 그 당시 당 의회 및 의장에게 유일한 신뢰를 경주하는 중대한 시기에 사무로 서울 여행을 하여 장기간 체재하였다는 것은 이해키 곤란하며 김 의장은 조례안심의에 있어 일독회 이독회의 생략결의생략결의도 없이 독단처사를 하는 등 의사진행방법도 졸렬한 것이다.

- 피폐일로의 당 시 실정에 조감하여 모든 문제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불원파멸상태에 도달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결코 어떠한 정파쟁의가 아니고 부득이 본 건 불신임결의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동의 찬성발언이 있었음.

◇김 상 태 의원

- 국회조사단 내목시 의장이 사무로 여행하여 불신임이라면 영접책임을 가졌든 각분과위원장도 당선무효가 아니겠는가.

◇강 영 락 의원

-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일종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며 어떠한 정파에 대한 작란(作亂)일 것이며 모종의 복선이 개재되었음을 의심않을 수 없다. 전통있는 시의회로 하여금 여사 불신임 결의를 감행한다는 것은 13만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불과 1개월 후에 또 하나의 불신임결의가 제안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 하겠다.

- 어디까지나 제 의원의 양심에 호소하여 철회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김 경 인 의원

-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감이라 원래 미숙하고 연소한 사람으로서 저의 부덕을 뉘우치는 바이나 이 문제에 대하여 제의원의 양심적인 선처를 바란다.

- 국회조사단이 내목시 응접을 못하였느냐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53회 4차 회의석상에서 양해를 구하고 부의장과 각분위장에게 위촉할 것을 결의하였든 것이며 미온적인 구호대책을 하였다하여 그 책임을 의장에게 전가하나 제의원과 행정부 사이에 수차 구수회의를 하는 등등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본회의를 소집하여 놓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이나 행정부로서는 상수도문제 기채(起債)관계의 초급성이 엿보였던 것으로 내무 산업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그 심의가 없었던만큼 급시를 요하였기 때문에, 각분위장 등과 합의한 연후 분위기를 먼저 개최하였든 것이다.

- 왜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책임을 면하려 하는가. 그리고, 도의장 및 광주시측의 위문단이 내목하였을 적의 응대를 말하나, 행정부측의 연락을 받아본 사실조차 없는 것이다. 규탄을 받을만한 논법이 서면 얼마든지 받겠으며 우수한 사람과 대체한다는 것이 정론이라면 차라리 사표라도 제출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 상 대 의원

- 동의

삼청 없어 폐기

◇부의장 정 응 표

- 폐회선언

- 끝이어 폐회식이 있었음.

(하오 3시 3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茲以) 서명 날인함.

단기4289년 10월 23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강 영 락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목포시의회의장 김경인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 (10/22 접수)

1.주문

목포시의회의장 김경인씨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직무를 태만하였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의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2항에 의거 불신임을 결의코저함.

2.이유

가, 남교동공설시장 화재로 인한 수천명의 이재민 구호와 차(此)의 재건은 가장 긴급을 요하며 더욱이 국회조사위원단이 거(去) 9월 29일 래목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3만시민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또는 구호대책위원장으로서 사무(私務)를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고 출타하였음은 직무태만이 라않이 할 수 없음

나, 거 9월 26일 제53차 임시의회에 부의된 목포시 상수도확장공사비 기채승인의 건을 본회의 결의없이 본회의 시간과 동시에 내무, 산업 분과 연석위원회를 의장이 소집하여 개의하였음은 목포시의회 의원회 조례제 14조의 위배 행위라고 양이 할 수 없음.

다, 기타는 구두로 설명함.

단기 4289년 10월 일

동의자 의원 김상대

찬성자 의원 김성균

“ “ 김창희

“ “ 임석희

“ “ 김남진

“ “ 김삼성

“ “ 정응표

“ “ 명남철

“ “ 김일섭

“ “ 천철수

“ “ 이정권